단 체 상 해 보 험 (규약)

1. 대상

계약기간 내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

2. 가입목적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차원에서 예방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입한다.

3. 가입조건

실손의료비(상해입원) - 표준형(입원 20% 면책) : 1천만원

실손의료비(상해통원_외래) - 표준형(외래_정액형 및 정률형 면책) : 25만원

실손의료비(상해통원_처방조제) - 표준형(외래_정액형 및 정률형 면책) : 5만원

4. 보험금 수익자 지정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료는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이 지불하며,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피보험자로 한다.

5.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간의 합의

회원들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들은 위의 내용에 합의한다.

보험계약자 :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서명)

피보험자 대표 : (서명)